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 선고 2020가단1836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7 선고 2021나4812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 선고 2020가단18369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성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종결 2021. 5. 7.

판결선고 2021. 7. 2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7,439,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19.부터 2020. 6. 9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2, 3호증 및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일대에 신축하는 F아파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의 계약금 절반액인 30,215,000원을 대출받아 2010. 7. 6.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, 이때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그 후 원고는 2019. 7. 19.경 D조합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47,439,3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,439,3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9. 7. 1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. 6. 9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“이 사건 아파트는 전세대에 천연온천수가 공급된다”는 과대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관한 원고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.

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세영